

서울특별시 성동구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캐릭터”를 “캐릭터, 심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심벌: 성동구 지형

제3조제2항 중 “휘장과 캐릭터”를 “상징물”로, “별표 3과”를 “별표 3, 별표 4와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심벌(성동구 지형): 무지개 색상과 성동구의 지형적 형태를 따르면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각 지역이 조화롭게 더불어 삶을 이루는 성동구를 상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휘장 및 캐릭터 도안의 사용 및 관리)”를 “(상징물 도안의 사용 및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휘장 및 캐릭터”를 “상징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별표 4”를 “별표 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휘장 및 캐릭터”를 “상징물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휘장 및 캐릭터 도안의 사용제한)”을 “(상징물 도안의 사용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휘장 및 캐릭터”를 “상징물”로 한다.







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심벌



CMYK 20/100/60/10	SD BLUE_CMYK 85/50/0/0
	
CMYK 0/100/70/0	
	
CMYK 0/80/100/0	CMYK 70/0/10/0
	
CMYK 0/60/100/0	CMYK 15/0/95/0
	
CMYK 0/35/100/0	CMYK 5/0/100/0
	
CMYK 0/10/95/0	CMYK 85/10/95/0
	
CMYK 80/80/0/0	CMYK 60/0/100/0
	
CMYK 35/55/0/0	CMYK 40/0/100/0
	
CMYK 75/20/25/0	CMYK 15/5/100/0
	

주 심벌

컬러의 재현이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는 성동구의 주 심벌 이미지이다. 심벌 이미지의 독립성을 위해 최소공간 및 그리드 관계를 지켜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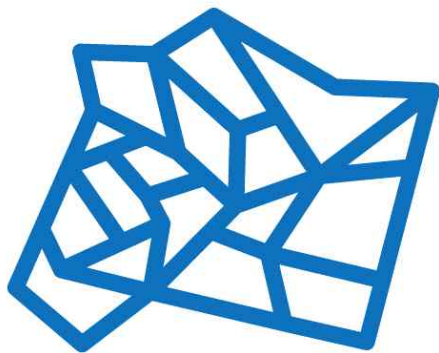
색상체계

전용색상은 재질에 따라 표현색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상 견본에 기준하여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



부 심벌 / 과분할형

다양한 컬러의 재현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성동구의 부 심벌 이미지이다. 영상이나 웹, 결과물의 품질이 보장되는 인쇄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

부 심벌 / 선형

위치하는 배경이 복잡한 경우, 색상의 표현이 제한적인 경우 등 단색의 심벌 이미지의 전달력이 더 효과적일 경우 우선 사용한다.

기본컬러는 성동블루이며 필요에 따라 흑과 백, 회색조로 사용할 수 있다.



부 심벌 / 면형

단색의 심벌 이미지의 전달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 중 입체물의 투각 등 선형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.

기본컬러는 성동블루이며 필요에 따라 흑과 백, 회색조로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고 한다)를 상징하는 휘장, <u>캐릭터</u>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<u>캐릭터, 심벌</u> -----.</p>
<p>제3조(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)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② <u>휘장과 캐릭터</u>의 규격 및 동물, 식물 등 자연상징물은 별표 1, 별표 2, <u>별표 3</u>과 같다.</p>	<p>제3조(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심벌: 성동구 지형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<u>상징물</u>----- ----- -----<u>별표 3, 별표 4와</u>-----.</p>
<p>제4조(상징물의 의미) 상징물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상징물의 의미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심벌(성동구 지형): 무지개 색상과 성동구의 지형적 형태를 따르면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각 지역이 조화롭게 더</u></p>

3. (생략)

4. ~ 6. (생략)

제7조(회장 및 캐릭터 도안의 사용 및 관리) ① 회장 및 캐릭터 도안을 사용할 때는 제작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,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을 활용하여 구기를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.

1.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.

2.·3. (생략)

③ 회장 및 캐릭터 도안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회장 및 캐릭터 도안의 사

불어 삶을 이루는 성동구를 상징한다.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제7조(상징물 도안의 사용 및 관리) ① 상징물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-----
-----별표 5
-----.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③ 상징물-----

-----.

제8조(상징물 도안의 사용제한)

용제한) 휘장 및 캐릭터 도안은
영리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할
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구청장의
승인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
아니한다.

상징물-----
-----.

-----.